

#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7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4월 21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다자녀 가족 지원 사항 중 중앙정부에서 기지원하고 있는 “전기료 및 난방비 등”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과의 체계 정합성이 미흡한 “지방세 감면” 사항을 삭제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다자녀 가족 지원 사항으로 신설한 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 지원 중 전기료 및 난방비 등과 공공요금 감면을 삭제함(안 제5조제2호 및 제5호).

##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주거안정(전기료 및 난방비 등을 포함한다)”을 “주거안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공공요금 및 지방세”를 “공공요금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다자녀 가족 지원)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5조(다자녀 가족 지원)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(전기료 및 난방비 등을 포함한다) 지원</u></p> <p>3. <u>양육·보육·교육 등의 지원</u></p> <p>4. <u>보건·의료, 복지, 교통 등의 비용 지원</u></p> <p>5. <u>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</u></p> <p>6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	<p>제5조(다자녀 가족 지원)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택공급 및 주거 안정 지원</u>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<u>공공요금 감면</u></p> <p>6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”를 “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
3. 양육·보육·교육 등의 지원
4. 보건·의료, 복지, 교통 등의 비용 지원
5. 공공요금 감면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